



'15학년도 하반기 행정감사 사례집

'16.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무국 행정지원과)

CONTENTS

I	제1장 수업 · 시험 관리분야	1
II	제2장 학생 · 학적 관리 분야	5
III	제3장 복무 · 서무 관리 분야	8
IV	제4장 보안 관리 분야	11
V	제5장 회계 관리 분야	13
VI	제6장 물품 · 국유재산 관리 분야	17

제 1 장

수업 · 시험
관리 분야

1

수업·시험관리 분야

시험결시자 성적 인정 처리 부적정

각종 시험에 불가피한 사유로 결시한 학생 중 결시자 인정범위에 해당되어 인정 사유별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지역대학장의 승인으로 결시자 성적인정 처리를 하고 있으나, 일부 학생들이 결시사유 인정 범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결시자 승인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되어 있음

근거 학업성적 평가처리 규정, 학업성적평가처리지침

사례1 ○○지역대학에서는 시험 결시자 승인 과정에서 총 11명에 대해 수험표, 출·입국사실확인서 및 입원확인서(시험당일 미포함) 등 증빙서류를 누락(미비)한 사실이 있음

사례2 ○○지역대학에서는 2014학년도 1학기 출석수업대체시험에서 비상근무 명령이 아닌 회의참석 증빙서류를 제출한 결격자 ○○○에 대하여 비상근무로 인한 결시를 승인하였고, 2015학년도 1학기 중간시험에서는 응시한 시험 분야를 확인할 수 없는 서류를 제출한 결격자 ○○○에 대해 시험 응시로 인한 결시를 승인한 사실이 있음

사례3 ○○지역대학에서는 2014. 1학기 출석수업대체시험 결시자 및 2015. 1학기 기말시험 결시자 추가시험 승인처리 과정에서, 출장공문이 없거나 선교를 위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국외출장 사유로 결시 신청한 결격자 2명에 대해 국외출장 사유로 인한 결시 승인을 하였고, 메르스와 관계없는 진단서를 제출한 결격자 1명에 대해 메르스로 인한 결시승인을 한 사실이 있음

각종시험 관리 · 감독관 편성 부적정

시험 감독관 편성 시 학생수가 20명 이하인 반의 경우 감독관을 1명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고, 근무일에는 감독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

근거 2015. 1학기 기말시험 시행계획, 2014. 1·2학기 출석수업대체시험 시행계획

사례1 ○○지역대학에서는 2015. 1학기 기말시험 1개반 및 2014. 1·2학기 출석수업대체시험 3개 반 감독관 편성에서 학생수가 20인 이하임에도 1명으로 편성하지 않고 감독관을 2명으로 과다 편성한 사실이 있음

사례2 ○○지역대학의 2014. 1학기 ~ 2015. 1학기 출석수업시험 관리감독 편성 현황을 조사한 결과 도서관 토요일 근무자를 근무 당일 실시되는 출석수업시험의 관리감독관으로 총 7회 편성하여 출석수업시험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감독수당 1,146,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출석수업 성적 처리 부적정

매 학기 출석수업 기간 중에 교과목별로 배정한 수업시간의 수업시간 중 2시간을 초과하여 결석한 학생은 해당 교과목의 출석수업시험 성적을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근거 학업성적 평가처리 규정, 출석수업 관리규정, 출석수업 운영계획

사례1 ○○지역대학의 2015.03.01.~2015.06.13.(15주) 기간에 실시된 '15.1학기 출석수업에서 아동관찰및행동연구(유아 1년) 강의를 담당한 ○○○ 강의교수는 8시간 중 4시간을 결석한 ○○○ 학생에게, 청소년학습이론및지도(청소년 2년)강의를 담당한 ○○○ 강의교수는 6시간 중 3시간을 결석한 ○○○ 학생에게 각각 1등급을 부여한 사실이 있음

사례2 ○○지역대학 2015학년도 1학기 강의를 담당한 ○○○ 강의교수 등 3명의 교수는 결석시수가 2시간을 초과한 5명의 학생에게 성적을 부여하였으며, 2014학년도 1학기 강의를 담당한 ○○○ 강의교수는 ○○○ 학생의 출석수업과목인 '유아음악교육' 수업에 8시간 중 4시간을 조모상으로 결석하였음에도 2등급을 부여하였음

출석수업 출석부 및 성적표 관리 부적정

출석수업 출석부의 수강인원 정정 시에는 담당교수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정정하여 기재사항을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

근거 출석수업 운영계획

사례1 ○○지역대학의 '14. 1학기 ~ '15.1학기 출석수업 출석부 및 성적표 관리 시 5건은 성적등급을 수정테이프로 도말하여 수정 전 내용을 알 수 없도록 서명 없이 수정하고, 8건은 연필로 성적등급을 표기하였음에도 표기 후 수정할 수 없도록 조치하지 않은 등 총 13건의 출석부 및 성적표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실이 있음

출석수업 시간강사 위촉서류 미구비

출석수업 강사로 부득이 석사학위 소지자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강의경력(90시간 및 2학기 이상)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으로 단과대학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하고 있고, 신규강사 위촉 시 자격증빙서류(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징구하여 구비하도록 되어 있음

근거 출석수업 운영계획

사례1 ○○지역대학의 '15. 1학기 출석수업 신규 외래강사 위촉 시 석사학위 소지자 2명을 신규강사로 위촉하면서 단과대학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고, 11명은 자격증빙서류 없이 위촉한 사실이 있음

사례2 ○○지역대학에서는 2012. 2학기~2014. 2학기까지 신규 위촉 강사 128명 중 ○○○ 외 21명에 대하여 강사자격 증빙서류(학위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구비하지 않은 채 출석수업 시간강사로 위촉한 사실이 있음

각종시험 응시허가증 관리 소홀

신분증을 지참하지 못해서 해당 시험장 시험관리 책임자의 응시허가서를 발급 받아 시험에 응시한 경우 시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본인임을 반드시 확인 받도록 되어 있음

근거 | 학업성적평가처리지침, 각종시험 시행계획

사례1 | ○○지역대학에서는 2014학년도 1학기, 2학기 및 2015학년도 1학기 동안 각종시험과 관련하여 응시허가증을 확인 후 확인 자료를 남겨두지 않고 폐기한 사실이 있음

제 2 장

학생 · 학적
관리 분야

2

학생·학적관리 분야

학생주소록 관리 소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학생주소록 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해야 하며, 주소록 사용대장을 관리하고 사용(열람)하는 교직원에게는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생산된 모든 주소록은 사용종료 후 관리책임자 책임 하에 폐기하고 그 결과를 자체 보관·유지하도록 하도록 되어 있음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1조, 학생주소록 관리 지침

사례1 ○○지역대학에서는 2012 ~ 2014년도에 학생과로부터 총 8건의 신·편입생 합격자 명단을 인수 받았으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았고, 서약서, 사용대장, 폐기 현황 등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상태로 개인정보를 사용한 사실이 있고, 학생과로부터 총 3건의 신·편입생 합격자 명단을 인수 받았으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았고, 학생주소록 사용대장 작성 및 보관이 부적정하며,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폐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1학기에 사용한 학생 410명의 주소를 감사일 현재(2015. 11. 20.)까지 방치하는 등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관리한 사실이 있음

사례2 ○○지역대학에서는 2013년도에 학생과로부터 총 3건의 신·편입생 합격자 명단을 인수 받았으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고, 인수증, 서약서, 사용대장, 폐기현황 등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상태로 개인정보를 사용한 사실이 있고, 2014~2015년도에는 학생과로부터 총 6건의 신·편입생 합격자 명단을 인수 받았으나 인수증(1건), 서약서(4건), 사용대장(6건), 폐기현황(1건)의 작성을 누락하여 학생 주소록의 인수, 사용, 폐기에 이르는 일련의 관리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사용한 사실이 있음

사례3 ○○지역대학에서는 2011. 2학기부터 2013. 2학기까지 학생과로부터 총 7건의 학생 주소록을 인수 받았으나 주소록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고, 인수증, 서약서, 사용대장, 폐기 현황 등을 작성·관리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사용한 사실이 있음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원 결재 소홀

학적부의 기재사항 중 성명·생년월일·출신학교 등이 사실과 다르게 등재되었거나 누락되어 변경된 경우에는 객관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와 함께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원을 제출하여 정정·추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위임전결 규정」(규칙 제922호)에 따르면 지역대학 소관 업무 중 '학적부기재사항 정정 및 처리'는 학장이 결재하도록 되어 있음

근거 학적사무 처리 규정 제8조

사례1 ○○지역대학에서는 2011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2011학년도 36건, 2012학년도 138건, 2013학년도 145건, 2014학년도 129건, 2015학년도 77건, 총 525건에 대한 학적부 기재사항을 정정 처리하면서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정정 처리 결과에 대한 결재(증빙서류 확인 불가)만을 받고, 학적부 정정원 및 관련 서류에 대하여 행정지원팀장 및 지역대학장의 사전 확인 및 결재 없이 담당자 확인만으로 학적부 기재사항을 정정 처리한 사실이 있음

학생지도계획 미수립

각 지역대학은 관할 지역 학생회, 시·군학생회 현황 및 관리 실태를 기초로 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자체 학생지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

근거 학생과 “2012~2015학년도 학생지도 기본계획 알림” 공문

사례1 ○○지역대학에서는 2011. 2학기부터 2015년까지 학생지도에 관한 지역 대학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제 3 장

복무 · 서무
관리 분야

3

복무·서무관리 분야

사무 인계·인수서 작성 소홀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과 업무가 반복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표준화·전문화 될 수 있도록 업무편람을 문서로 작성하여 인계·인수하도록 되어 있음

근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1조 및 제62조,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45조 및 제46조, 우리 대학 총무과 '2007~2008년 일하는 방식 개선 추진 계획(총무과-5028, 2007.10.25.)

사례1 ○○지역대학에서는 2014년부터 2015년 11월까지 사무 인계·인수서 작성 대상 총 36건 중 7(19%)건만 작성하고 29건(81%)은 작성하지 않았으며, 업무편람은 모두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사례2 ○○지역대학에서는 2014년 1월부터 2015. 9월 현재까지 인계·인수서 관리 실태를 표본 확인한 결과, 학내 인사발령 등에 따라 총 14회의 업무분장을 실시하였으나 사무 인계·인수서 작성대상 총 54건 중 8(14.8%)건만 작성하고 46(85.2%)건은 작성하지 않았으며 업무편람은 모두 누락된 사실이 있음

승진시험(면접) 참석자 공가 처리 부적정

승진시험(면접 포함)·전직 시험은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하도록 되어 있음

근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

사례 ○○지역대학에서는 2012년 6월부터 2015. 10월 현재까지 출장처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은 2014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대학본부에서 실시하는 승진후보자 인터뷰 참석을 위하여 총 5회 10일을 출장으로 처리하고 출장비 91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병가 실시 부적정

병가의 운영방법은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병가 연간 누계 사용일이 7일 이상인 경우는 전체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음

근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질의응답 사례집

사례1 ○○지역대학의 ○○○은 진단서 제출 없이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여 병가를 사용한 일수가 총 4일(2013년 3일, 2014년 1일)이며, 동 4일을 전체 연가일수에서 제외하지 않고 연가보상비 총 329,84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자체 전보발령 부적정

소속 직원의 시·군학습관 전보에 관한 권한은 지역대학장에게 위임되어, 시군학습관 직원은 지역대학장이 인사발령 시 임용이력 관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보 결과를 행정지원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근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 제25조

사례1 ○○지역대학에서는 2014년부터 2015년 11월까지 시·군학습관 전보 인사발령 없이 5명[2015.01.05.(1명), 2015.01.19.(3명), 2015.11.01.(1명)]을 업무분장으로 이동 배치한 사실이 있음

사례2 ○○지역대학에서는 2011. 10월부터 2015. 9월 현재까지 자체전보 발령은 1건, 업무분장에 따른 이동은 5건이며, 전보 결과 제출은 1건, 미보고는 5건이며, 1명의 직원은 현 부서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데도 업무분장으로 전보를 실시한 사실이 있음

제 4 장

보안 관리
분야

4

보안관리 분야

개인정보 관리 소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음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

사례1 ○○지역대학에서 관리되는 PC중 총 7대에서 499건의 주민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 파일을 별도의 안정성 도구(암호화 등)없이 파일형태로 보관한 사실이 있음

사례2 ○○지역대학 수업조교 ○○○이 관리하는 PC 1대에서 1,761건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 파일을 별도의 안정성 도구(암호화 등)없이 파일형태로 보관한 사실이 있음

전자문서시스템 개인정보 관리 부적정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음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

사례1 ○○지역대학의 2014~2015년도 전자문서 중 총 40건의 문서에서 주민번호, 계좌번호, 민감정보(장애)가 포함된 개인정보 파일이 별도의 안정성 도구(암호화 등)없이 첨부파일 형태로 방치된 사실이 있음

제 5 장

회계 관리
분야

5

회계관리 분야

계약금액 결정 부적정

예산은 사업별 편성목적에 부합하게 집행하되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고 있음

근 거 2012~2014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사례

○○지역대학에서는 ‘사무용 소모품(우편소봉투) 구입’ (결의일자 2013.9.12.)건에 있어 시중가격 1장당 86원 상당의 A4규격봉투(모델명: 봉투35/ 행정양 면테잎 2호(인쇄)[220*105mm])를 계약상대자인 ○○○로부터 1개당 160원의 단가로 총 5,000장 880,000원(부가세 포함)에 구매 계약을 체결하여 집행함으로써 금407,000원을 절약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홍보물품(3색볼펜) 제작’ (결의일자 2013.9.12.)건에 있어 시중가격 1자루당 640원 상당의 3색볼펜(학교명 및 로고 인쇄 포함)을 계약상대자인 ○○○로부터 1개당 800원의 단가로 총 5,000자루 금4,400,000원(부가세 포함)에 구매 계약을 체결하여 집행함으로써 금1,200,000원을 절약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계약서류 작성 부적정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도록 되어 있음

근 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사례

○○지역대학에서는 2015년 2월 7일 ‘4분기 지역대학 참고도서 구입’ 건으로 계약서류(승낙사항 등)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254,680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출장여비 지출 부적정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되, 국내 여행자가 여비 중 항공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국고금 관리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로 운임 실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근거 공무원 여비 규정

사례 ○○2015년 10월 24일부터 2015년 10월 25일까지 출석수업으로 인한 출장자(○○○ 교수)가 2015년 10월 25일 제주에서 김포로 가는 항공운임으로 기관카드 87,100원을 결제하였음에도, 112,100원으로 과다 지출하여 감사일 현재(2015. 11. 20.)까지 별도의 반납조치 없이 법인카드 결제계좌에 차액 금25,000원을 보관한 사실이 있음

관사 전세보증금 세입 처리 소홀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은행 또는 금고은행에 납입하도록 하고 있음

근거 국고금 관리법 제12조

사례 ○○지역대학에서는 2012년 6월부터 2015. 10월 현재까지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학장 관사 전세보증금 210,000,000원과 행정지원팀장 관사 전세보증금 55,000,000원을 각각 '15.03.26일과 '15.02.16일에 반환 받아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에 입금처리 후 2015년 10월까지 2건 265,000,000원을 세입 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계약 체결 부적정

2014년 ○○지역대학 시설물관리(청소·방호) 용역 계획(안) 및 2015년 ○○지역 대학 시설물관리(청소·방호) 용역 계획(안)의 시설물관리(청소) 특기 시방서에 따르면 ○○지역대학, ○○시학습관 및 ○○시학습관의 청소도급 업무사항으로 매월 1회 이상 학내 잡초제거 등을 하도록 되어 있음

근거 ○○지역대학 자체 용역 계획

사례 ○○지역대학의 시설물 관리 용역 업체는 시설물 관리(청소·방호) 특기 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잡초제거 및 기타 청소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지역대학에서는 조경관리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타 업체와 체결('14년 7월~12월, '15년 1월~12월) 하여 잡초제거 및 잔디예지 등을 용역사항에 포함하여 중복발주 되었고, '14년 잡초제거 650,000원, 잔디예지 및 정리 660,000원, '15년 잡초제거 1,560,000원, 잔디예지 및 정리 2,640,000원 등 총 4건에 대하여 5,51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제 6 장

물품 · 국유재산
관리 분야

6

물품국유재산관리 분야

물품 취득 관리 부적정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 서식에 물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유지하도록 되어 있음

근거 물품관리법 제24조

사례 ○○2015년 2월 지역대학장 관사에 냉장고(금1,500,000원)와 전자레인지(금99,000원)를 구입한 후 동 취득 내용을 물품대장에 '15. 10월 현재까지 미등재 한 사실이 있고, 2015년 2월에 구입한 행정팀장 관사 비품 3점의 취득금액에 대하여 냉장고는 1,500,000원(구입비용:1,490,000원), PC는 1,099,000원(구입비용:1,069,000원), 프린터는 349,000원(구입비용:268,000원)으로 각각 오등재 하였으며, 취득일자를 2015년 2월이 아니라 10월로 오등재한 사실이 있음

관사비품 지원 부적정

우리 대학 교직원 주거용 관사에 비품을 제공할 경우 「지역대학 관사 운영 관리지침」 제5조(관사비품 지원기준)에 따른 별표 2의 품목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근거 지역대학 관사 운영 관리 지침

사례 ○○지역대학에서는 2014년 2월 3일 관사비품 지원기준에 없는 밥솥(1개/335,000원)을 구입하여 지원한 사실이 있음